

## 8. 건축법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8-276호 1998. 7. 10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32개 용도군에서 21개로 축소·조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용도군만으로 기재도록 함.
- 나. 21층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·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허가를 하였으나, 앞으로는 시·도지사가 직접 허가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.
- 다.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.
- 라.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을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시설군간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고, 신고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.
- 마. 건축공사의 착수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·멸실신고와 착공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.
- 바. 현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피난, 방·내화 등을 위한 건축기준 중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설계기준으로 고시하도록 법령을 단순화하고 신기술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함.
- 사.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의 위치에 따라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.
- 아. 종전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최소한의 대지규모를 정하여 최소 규모에 미달

된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용함.

- 자.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단순화 함.
- 차.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일조 기준을 폐지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함.
- 타.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되어온 통로 등은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함.

### 개정 이유

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시·도지사가 직접 허가하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, 상업지역 안에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일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, 개별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축규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함.

주택회보